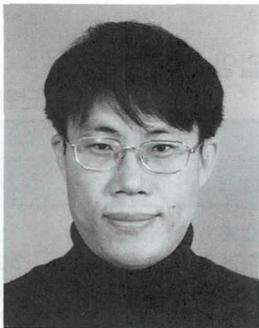


##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서언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입양은 종래 가계계승 중심에서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50년대에 한국전쟁동안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국외입양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1976년에 국외입양 절차 보완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개칭)되었으며, 최근 1995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李 三 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나라 입양제도는 가계계승 중심의 전근대적 요소가 남아 있으며, 행정편의 주의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 강화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양대상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의 강화 차원에서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입양 추이

1958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입양 추이를 살펴보면(표 1 참조), 1960년대 전체 입양 중 국내입양 비율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 전개)의 영향으로 3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1970년대 아동복지시설 정비의 결과 시설이 줄어든 반면, 요보호아동이 증가하여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국외입양에 의존하여 국내입양 비율은 24.1%로 낮아졌다. 이렇게 국외입양이 증가하여 국·내외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폈다. 그러나 시책들이 큰 변화를 보지 못하자, 1980년대 초에는 국외입양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내입양비율이 25~30%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외국 언론들의 비판이 일자 다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서 국내입양비율은 점차 높아져 최근 1999년에는 41.7%로 높아졌다.

표 1. 국내·외 및 발생원인별 입양 변동추이

(단위: 명, %)

연도	계 (A)	국내·외 입양			발생원인		
		국내(B)	국외(C)	B/A	미혼모	기아·빈곤	결손가정
1958~60	2,700	168	2,532	6.2	290(10.7)	1,755(65.0)	655(24.3)
1961~70	11,481	4,206	7,275	36.6	2,467(21.5)	6,975(60.8)	2,039(17.8)
1971~80	63,551	15,304	48,247	24.1	26,702(42.0)	22,220(35.0)	14,629(23.0)
1981~85	50,502	15,424	35,078	30.5	33,051(65.4)	8,748(17.3)	8,703(17.2)
1986~90	41,322	11,079	30,243	26.8	33,798(81.8)	2,736( 6.6)	4,788(11.6)
1991~95	16,791	5,817	10,974	34.6	14,068(83.8)	1,361( 8.1)	1,363( 8.1)
1996	3,309	1,229	2,080	37.1	2,822(85.3)	297( 9.0)	190( 5.7)
1997	3,469	1,412	2,057	40.7	3,082(88.8)	266( 7.7)	121( 3.5)
1998	3,675	1,426	2,249	38.8	3,291(89.6)	296( 8.1)	88( 2.4)
1999	4,135	1,726	2,409	41.7	3,622(87.6)	204( 4.9)	309( 7.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그러나 여전히 국내입양 비율이 국외입양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혈연증시 경향으로 인해 국내가정들이 입양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입양된 아동의 발생원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모 아동의 비율이 1970년대 42%에서 1990년대 후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기아 및 결손가정 아동의 비율은 초기에 약 90%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12%수준에 불과하였다. 기아의 입양감소는 1980년대 초부터 기아의 국외입양을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입양된 아동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아동이며, 결손가정과 기아·빈곤가정 아동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국외입양 아동 중 30~40%가 장애아인 반면, 국내입양 중 장애아 비율은 1% 미만으로 아주 낮다 (표 2 참조). 이는 국내가정이 장애아 입양을 기피하는 반면, 국외가정의 경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입양 중 국내입양 비율이 국외입양보다 훨씬 낮는데, 이는 혈연증시 경향으로 인해 국내가정들이 입양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 3. 입양제도의 문제점

#### 1) 입양요건 및 입양기관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요건 중 양자될

표 2. 입양아 장애여부별 입양추이

(단위: 명, %)

연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정상아동	장애아동	정상아동	장애아동
1958~60	2,700	168(100.0)	-	944(37.3)	1,588(62.7)
1961~70	11,481	4,206(100.0)	-	5,211(71.6)	2,064(28.4)
1971~80	63,551	15,303(99.99)	1(0.01)	43,649(90.5)	4,598(9.5)
1981~85	50,502	15,421(99.99)	3(0.01)	28,020(79.9)	7,058(20.1)
1986~90	41,322	11,070(99.92)	9(0.08)	20,923(69.2)	9,320(30.8)
1991~95	16,791	5,717(98.3)	100(1.7)	6,082(55.4)	4,892(44.6)
1996	3,309	1,212(98.6)	17(1.4)	1,145(55.0)	935(45.0)
1997	3,469	1,400(99.2)	12(0.8)	1,273(61.9)	784(38.1)
1998	3,675	1,420(99.6)	6(0.4)	1,403(62.4)	846(37.6)
1999	4,135	1,712(99.2)	14(0.8)	1,584(65.8)	825(34.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자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이어야 하며, 양친될 자는 국내 입양의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국외입양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경제력 및 생존가능성에 비추어 보아 양자 부양이 곤란해지며, 양자의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불임부부 대부분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입양을 시도함으로써 양친자간 연령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많고, 국내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sup>1)</sup>에 의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 연령차이의 엄격한 제한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불법입양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의 강제출연, 앵벌이 이용 등 아동의 착취 및 학대와 연계될 수 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불법입양 알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 2) 입양절차

국내입양은 아동인수, 요보호아동수용승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후견인설정·부양의무자확인공고, 무적아인 경우 성·본 창설, 입양희망 부부의 입양신청 및 정보제공, 가정조사, 결연, 사후관리 등 절차를 거친다. 국내에서 국외입양인 경우 국내입양절차 외에 법원의 입양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과정이, 그리고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국외입양인가가 추가된다. 이와 같이 입양절차가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등 입양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은 아동의 친부모(부모 사망 기타 사유로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부(특히, 미혼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친부의 동의없이 입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입양후 친부의 입양취소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하여야 하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동의 하한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는 것은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요보호아동을 발견시

1)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2년 입양동기 중 75%가 불임가정이었으며, 이 외 가정화목(6.8%), 가계계승(17.6%) 등으로 나타난다.

보호 조치토록 되어 있다. 반면, 요보호아동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입양기관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입양절차를 진행시킨다. 즉, 입양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량이 증가하고 책임이 따르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 요보호아동의 대부분은 조속한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나, 지방 발생시 서류구비·이송 등으로 수용승인이 지연되어 적절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입양대상아동은 요보호아동으로 간주되나,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에게 제공되는 생계·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이 기아인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양의무자확인공고문을 관할 시·군·구의 게시장에 15일간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친부모가 관할지역에 거주하며 게시기간에 게시판을 볼 수 있을 때에만 실효성이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 입양대상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 취적하고 입양후 신호적을 갖게 되는데, 원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호적을 갖게 된다. 특히, 입양 사실이 신호적에 기록되어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양친은 아동의 단독 취적 없이 불법적으로 친자입적하고 있다.

입양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정조사는 입양신청후 직장, 이웃, 해당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비밀방문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밀 조사는 양친될 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방문하는 경우 출타 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양친될 자에 심적 부담을 주고 있다. 가정조사가 신청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서류보완 등의 기간이 소요되며 양친될 자와의 신뢰구축이 안되어 비현실적이다.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호적법에 의거, 친권자와 양부모 및 성년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 3) 사후관리

해외입양아는 성장후 모국방문 등을 통해 출생배경을 문의해 오고 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이들에게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모국에 관한 자료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국<sup>2)</sup>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정보의 비밀규정(누설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양기관은 행정처분)만 있을 뿐,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입양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친모가 정 의 파탄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관계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토록 하고는 있으나, 입양서류의 원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보건복지부는 5년후 폐기처분하고 있어 입양기관은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다.

### 4)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입양특례법에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파양(협의 또는 재판파양)시 입양승낙자인 법정대리인이 협의 및 재판청구권을 가지나, 이들은 입양완성으로 양자에 대한 권한이 소멸된 자들로서 법률적으로 자격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협의파양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법률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파양의 영향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

입양특례법에서는 파양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며, 입양기관은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불분명하며 또한 양자본인의 보호요청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입양이 친자입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양절차없이 법원에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파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기가능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내에 양친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해외입양인 경우에는 미국, 스웨덴 등 상대국 법령에서 입양취소소송의 제기 가능기한(보통 6개월)이 짧아 국내법과 상충되고 있다.

2) 양자가 18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나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허락하는 경우 양자의 입양정보 접근이 허락됨.

파양시 양자는 입양전 성(본)을 따라야 하나(입양특례법), 양자는 그 동안 사회생활과 법률적 관계에서 이용하여 온 성(본) 대신에 다른 성(본)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

#### 5) 입양비용 및 보조

정부는 국내입양지정기관에 연 1114만 8천원(상담원 1명 인건비 월 49만 2천원, 사무용품비 연 121만 5천원)을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미흡하며 1996년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마저 입양전문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입양하는 양부모는 양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아동 등 입양가정은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보조금은 1996년부터 월 10만원, 의료비는 연 20만원 한도 내로, 지원액이 미흡하고 입양의 비밀보장을 위해 입양가정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기관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에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금품이 아주 미미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4. 입양제도 개선방안

#### 1) 입양요건 및 입양기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임치료로 상당한 기간을 보낸 고연령 불임가정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양친될 자의 상한 연령조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연령 양친의 양자 양육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가정조사를 통해 방지될 수 있다.

불법입양은 입양을 사적 관계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또한, 전문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임치료로 상당한 기간을 보낸 고연령 불임가정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양친될 자의 상한 연령조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국가가 책임지되, 입양절차는 입양전문기관에 의해 진행되도록 한다. 이로서 국가가 아동의 가정배치 및 입양정보의 관리 등을 책임짐으로써 입양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가 인정한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국가차원에서 홍보하며 동시에 불법입양을 색출·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한 예로서, 친자입적 등 불법입양한 양친이 파양을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 청구를 법원에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나타난 불법입양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불법입양과 파양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사시 불법입양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친자입적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입양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법상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 2) 입양절차

입양절차는 입양기관이 입양을 시·군·구(가정복지과)에 의뢰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제 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각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 소지가 있는 서류에 대해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수용보호의되는 아동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입양사유, 입소일자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으로 가능케 하며, 이후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입양절차에서 친부의 권리를 강화하고 입양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로서 추정되는 자를 확인하여 입양절차에 참가토록 통보하며(등기우편 등), 거처 불명 또는 통보후 입양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부의 동의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한다. 양자될 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의 하한을 현행 15세에서 중학교 입학 연령인 12세로 낮추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중호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개입양이 정착되도록 하며, 현재 계류중에 있는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가정조사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비밀방문규정을 삭제한다. 한편, 가정조사는 양친될 자와의 신뢰구축 후에 이루어지도록 현행 신청 후 30일 이내에서 2~3회 상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행정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지 관청과 입양기관 소재지 관청간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규정한다. 국가가 입양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인력을 매년 입양업무(입양 여부와 관계없이)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입양이 양자될 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인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및 판결(명령)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 3) 사후관리

현행 입양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유지하되, 18세 이상 양자는 양친과 친부모 모두 승인한 경우와 양친·친부모가 승인하지 않으나 친권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양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부모, 양부모, 양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입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입양서류의 원본을 일정 기간 후에 입양기관으로 이송하여 행정기관의 문서파기로 인한 입양서류의 상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입양 취소 및 파양

현행 우리 나라의 입양제도에서 입양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파양으로 인한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해 민법의 파양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요보호아동의 특성상 부적절하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에 파양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현행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재판파양만을 인정하여 파양으로부터 권익과 복지가 보다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양시 아동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동의 재산소유, 후견인, 주거 등에 관하여 법원이 부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우리 나라의 입양제도에서 입양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파양으로 인한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록 할 필요가 있다. 과양협의 또는 재판청구의 자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 또는 재판 청구권자는 과양후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될 자가 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에서 과양시 입양기관에 아동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자에 대해 과양 후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될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양자 본인도 자신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입양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소의 제기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야 한다(미국의 1994년 신통일입양법, 일본신헌법). 예외적으로 양친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양자학대, 악의유기 등)에 취소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비록 입양취소 소 청구가능기간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없도록 한다.

입양취소 및 과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양 특히, 장애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5) 입양 비용 및 보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아래,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입양전문기관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을 전제로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이 입양의뢰시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자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로서 입양기관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물가와 연동되어야 하며, 적어도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의 요보호아동에게 지급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양육보조수당, 의료비 등)을 물가와 연동하여 증액시키며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는 비급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전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을 입양전 장애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양 후 장애나 큰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입양 후 일정기간 내에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한 아동의 입양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보호를 통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현실화하여야 한다.

### 5. 맺음말

입양은 궁극적으로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 즉, 입양의 모든 구성요소 및 입양절차는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입양절차에 있어서는 친부모 및 양부모의 권익이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을 통해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내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제도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이다. 아무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라도 요보호아동을 실제로 입양하는 일반가정이 입양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양을 기피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모든 국민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며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국민은 요보호아동에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어려서 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입양의 의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별지

입양의 모든 구성요소  
및 입양절차는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친부모 및 양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